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52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엄태영 · 정동만 · 권영진
이소희 · 서천호 · 박덕흠
이만희 · 이종배 · 김석기
김태규 · 김재섭 · 강명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자는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일부 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실증·증식·농가 보급 및 사업화로 확대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한 종자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별도로 보호·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자자급률을 확보하

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과 실증 및 육성·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국가전략종자”란 식량안보 및 종자주권 확보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전략종자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그 추진계획 및 자급률 확보방안

제2장에 제5조의3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종자자원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가전략종자의 연구·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전략종자의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대학·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국가전략종자의 연구·개발·실증 및 육성·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의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국가전략종자”란 식량안</u> <u>보 및 종자주권 확보를 위하</u> <u>여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u> <u>육성이 필요한 종자로서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u> <u>다.</u>
2. ~ 10. (생 략) 제3조(종합계획 등) ① (생 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2.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종합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국가전략종자의 적정한</u> <u>자급목표와 그 추진계획 및</u> <u>자급률 확보방안</u>
4. ~ 10. (생 략) ③ ~ ⑥ (생 략) <u><신 설></u>	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u>제5조의3(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u> <u>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u> <u>식량안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u> <u>국내 종자자원의 보호·관리</u>

<u><신 설></u>	<u>등을 위하여 국가전략종자의</u> <u>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u> <u>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u> <u>야 한다.</u> <u>제7조의2(국가전략종자의 연구·</u> <u>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u> <u>관은 국가전략종자의 연구·개</u> <u>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대</u> <u>학·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국</u> <u>가전략종자의 연구·개발·실</u> <u>증 및 육성·보급 사업을 실시</u> <u>하게 할 수 있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u> <u>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도 필요</u> <u>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지원할 수 있다.</u>
---------------------------	--